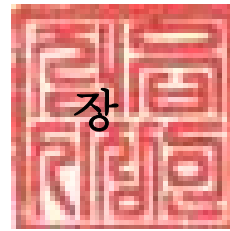


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
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규정에 의거 수거·이동·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(폐기 등)함을 공고하오니, 자전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0일

정 읍 시 장



1. 공 고 명 :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4. 21. ~ 2026. 5. 4.(14일)
3. 대상자전거 : 생활자전거 1대
4. 강제처분일시 : 2026. 5. 5. 이후
5. 강제처리장소 : 정읍시 시기동 275-41번지(한일약국 앞)
6. 문 의 처 : 정읍시 도시과(☎ 063-539-5793)
정읍시 시기동(☎ 063-539-7765)

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이동·수거 대장 1부. 끝.